

수신	각 언론사 사회·국제부, 국무조정실·기재·외교 출입, NGO 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국제위원회
문의	경실련 국제팀 (정호철 간사 / 02-766-5623)
일자	2018. 03. 08 (목)
제목	[논평]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논평 3매+권고안 16매)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 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림2】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 【그림1~9】 및 【표1-2】는 아래 권고안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그림3-4】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때,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그림5】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그림6】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림7】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 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 → 퇴직자 재취업 →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 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표1】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표2】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과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림8-9】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거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졌었다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밀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끝/.

아래 : [#.붙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 권고안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 권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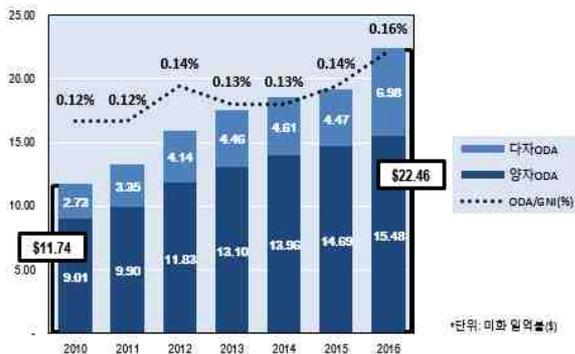
– OECD 한국 2018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 –

- 1. 원조기금 마련
 - 2. 유상원조 비구속화
 - 3.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
 - 4. 프로젝트 단위 사업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 5. 권고안
- 참고자료

1. 원조기금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ODA의 양적 측면에서,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는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난 2012년 권고안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인 ODA 외 항공권연대기금(Air Ticket Solidarity Levies) 등 다양한 개발금융 수단을 강구하여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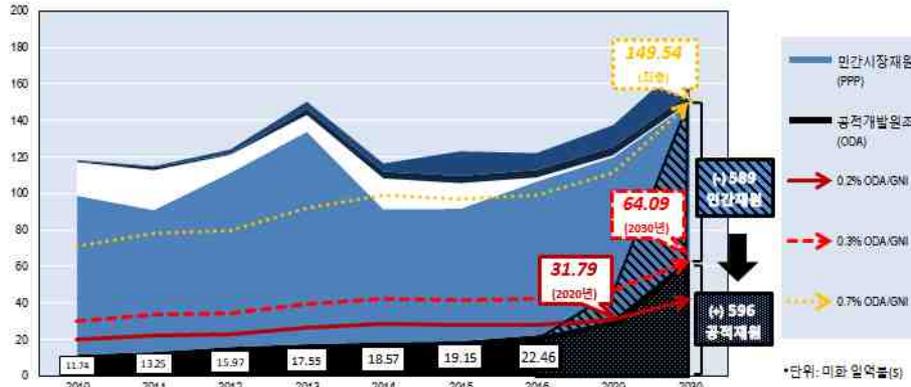
【그림1】 ODA 재원규모 추이 (10-16년)

*주석 : 순집행액 기준
*출처 : OECD 통계 재구성

【그림1】에서 보듯,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제공한 전체 원조금액은 지난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한 직후 \$11.74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22.46억 달러 규모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2015)과 OECD DAC의 2012년 권고안에서 약속한 목표치인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 0.25%에 훨씬 밑도는 수치로서, 2016년 0.1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비해, OECD DAC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ODA/GNI 평균은 동 기간 0.32%를 기록했고, 그 중 상위 6개국은 UN의 목표치인 0.7%를 이미 달성했다. 제1차 기본계획

실패이후, 현재 정부는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ODA/GNI 목표치를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로 재설정한 상태이다.

(2) 분석 및 평가



【그림2】 ODA 재원마련 추이 예측 시뮬레이션 (17-30년)

- *주석: 1) 순집행액 기준, USD1 = KRW1,078 고정환율(2018.2월 매매기준율)
 - 2) OECD 경제성장 예측 지표를 감안하여 GNI성장 매년 3%pt로 가정, $GNI \times 1.03^n$
 - 3) 17-30년 정부 목표 총 ODA 예상규모 = $\sum A_n(0.16\% + N \times 0.01\% \text{ ODA/GNI}) \times GNI \times 1.03^n$
 - 4) 17-30년 UN 목표 총 ODA 예상규모 = $\sum B_n(0.16\% + N \times 0.03857143\% \text{ ODA/GNI}) \times GNI \times 1.03^n$
 - 5) 민간재원 = A - B
- *출처: OECD 통계 재구성

【그림2】에서 보듯, 정부가 향후 경제성장 3% 수준에서 2020년까지 ODA/GNI 0.2%를 달성하려면 ODA 재원규모를 약 \$31.79억 달러(3조 4,12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ODA/GNI 0.3%를 달성하려면 약 \$64.09억 달러(6조 8,814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즉, 2017-2030년 동안 총 (+) \$596억 달러(64조 136억 원) 규모의 ODA 공적재원을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UN이 설정한 목표치인 0.7%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약 \$149.54억 달러(16조 611억 원) 수준, 즉 2017-2030년 동안 총 (+) \$1,857억 달러(127조 2,984억 원) 규모의 ODA 공적재원을 공여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여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정부예산만으로 공백을 메우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 부족한 공적재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 \$589억 달러(63조 2,853억 원) 규모의 국내외 민간재원을 공적재원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실정이다.

(3) 향후 추진과제

생각건대, 개발금융이 부족한 개발재원의 공백을 채우는 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서 채권형 민간 개발펀드에 투자를 지원하거나,¹⁾ 국제발행을 통해서 민간재원을 공적재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민간시장에서 개도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발금융사업 리스크를 보증하여 투자자를 유인하고, 민간시장의 합리적인 개발금융 상품을 통해서 개도국 경제에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촉매효과(Catalytic Effect)를 유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정부가 ODA 공적재원을 종자돈으로 활용하여 민간시장의 혁신적인 사회개발펀드에 대출을 지원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기관 투자자 등을 모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개발금융 프로그램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국내·외 민간재원을 동원(Mobilisation)하여 국제적 수준의 ODA/GNI 목표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²⁾

또한, 이번 보고서의 권고안과 같이 **항공권연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그 대안이 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운영하는 항공권연대기금인 국제질병퇴치기금(항공권 당 1천 원씩 부과)을 증액하여 그 공백을 채울 수도 있다. 해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내인구가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자원마련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여태껏 말뿐이었던 개발자원 마련에 단계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자원조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유상원조 비구속화

(1) 현황 및 문제점

ODA의 질적 측면에서,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4-2015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

물론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협력 ODA를 포함한 한국의 비구속화 양자원조 비중은 2015년 48.7%에서 2016년 57.0%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정부가 양자원조를 통해 수원국들에게 공여한 전체 개발재원의 57.0%를 자유입찰에 의해 대부분 현지 기업 등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였고, 전체 개발재원의 57.0%가 국내 기업을 거치지 않고 현지 시장 경제에 직접 유입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발휘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지난 2015-2016년 비구속화 실적만 놓고 보면**, 여태껏 우리나라가 구속성 원조에 해당하는 기술협력 ODA에 상당히 의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자원조의 자원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전년대비 비구속화 원조가 확대됐던 점 등을 감안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정부가 개발효과성을 제고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³⁾

* 반면, 동 기간 정부가 공여한 나머지 43.0%의 개발재원은 제한입찰에 의해 대부분 한국 기업 등을 통해서 물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수원국 시장에 직접 유입되지 못하고 국내 입찰기업의 영업이익으로 한정된 개발재원의 비중, 이른바 구속성 원조를 뜻한다.

하지만 【그림3】 및 【그림4】와 같이, 지난 2014-2015년 실적을 직접 비교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림3】 전체 양자원조 비구속화 추이 (12-16년)

*주석: 약정금액 기준
*출처: OECD 통계 재구성



【그림4】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추이 (12-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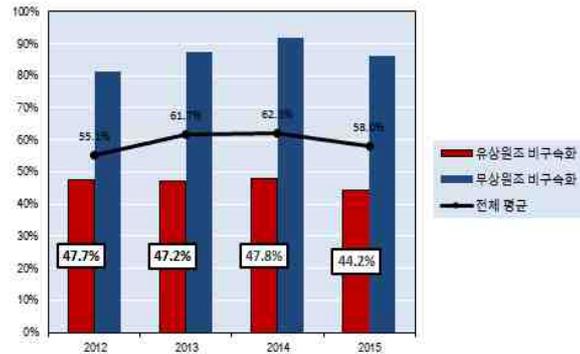
【그림3】에서 보듯, 보고서의 평가 보다 완화된 기준에서 구속성 원조에 해당하는 기술협력비용을 제외했을 경우 지난 2013-2015년 전체 양자원조의 비구속화 비중(실선)은 55.1% → 53.2% → 50.2%로 역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최소 기준에서 구속성 원조에 해당하는 행정비용 및 기술협력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14-2015년 비구속화 비중(점선)은 62.3% → 58.0%로 데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4】에서 보듯,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에 제공하는 ODA의 질적 수준도 낮았다. 기술협력 비용을 제외한 지난 2014-2015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에 대상 양자원조의 비구속화 비중(실선)은 58.4% → 49.1%로 오히려 더 하락했다. 또한 행정비용 및 기술협력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13-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68.4% → 62.3% → 51.0%로 오히려 더 역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결국, 【그림3】와 【그림4】은 2015-2016년 달리 2014-2015년에 우리정부가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제는 “2015년 전체 양자원조의 비구속화 비중의 평균이 48.7%인 것에 비해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비구속화 비중이 45.9%로 오히려 더 낮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DAC가 지난 2014년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60%pt 목표(개발효과성 벤치마킹 기준)에 역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반면, 동 기간 OECD DAC 회원국 전체 양자원조의 비구속화 비중의 평균은 76.2%인 것에 비해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비구속화 원조 비중의 평균은 약 83.5%로 더 높았다. 이 중 상위 11개국은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100% (구속화 Zero)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한국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⁴⁾

(2) 분석 및 평가

생각건대, 그 원인은 유상원조 추진체계의 구축화에 있다.

【그림5】에서 보듯, 행정비용 및 기술협력비용을 모두 제외한 한국의 2012-2015년 유·무상 원조 비구속화 비중의 전체 평균(실선 그래프)은 각각 55.1%, 61.7%, 62.3%, 58.0%에 비해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비중(빨간색 막대 그래프)이 47.7%, 47.2%, 47.8%, 44.2%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동 기간 2013년을 제외한 유상원조의 재원규모가 무상원조의 재원 규모 보다 컸던 점에 비춰 보았을 때, 구속성 유상원조는 ODA의 개발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었다. 특히,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비중은



【그림5】 유·무상원조 비구속화 추이 (12-15년)

*주석: 약정금액 기준, 행정비용 및 기술협력비용 모두 제외

*출처: OECD 통계 재구성

2012년 8.8%, 2013년 17.1%, 2015년 33.0%로 전체 평균도 역시 못 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이같은 유상원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

이같은 구속성 유상원조는 언제나 과거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들과의 신자유주의 약탈경제에 맞물려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소수 대기업과의 정경유착관계 속에서 정부의 저환율, 저금리, 중점유자정책 등의 금융혜택을 독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조물자를 현지 시세보다 싸게 후려치거나,⁶⁾ 해외 자원개발사업권을 독식하여 독점자본체제를 뒷받침하는 배경이 돼 왔었다.⁷⁾ 우리정부는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현행 유상원조 체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 수주를 통해 국내 대기업에게 지원한 구속성 개발재원은 지난 2012년 67.0%에서 2016년 85.7%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⁸⁾

이러한 분석에 비춰 볼 때,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일시적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된다. 효과성 측면에서 한동안 밀빠진 독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 됐다. 과거 우리정부가 양적 측면에서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결과이다.

(3) 향후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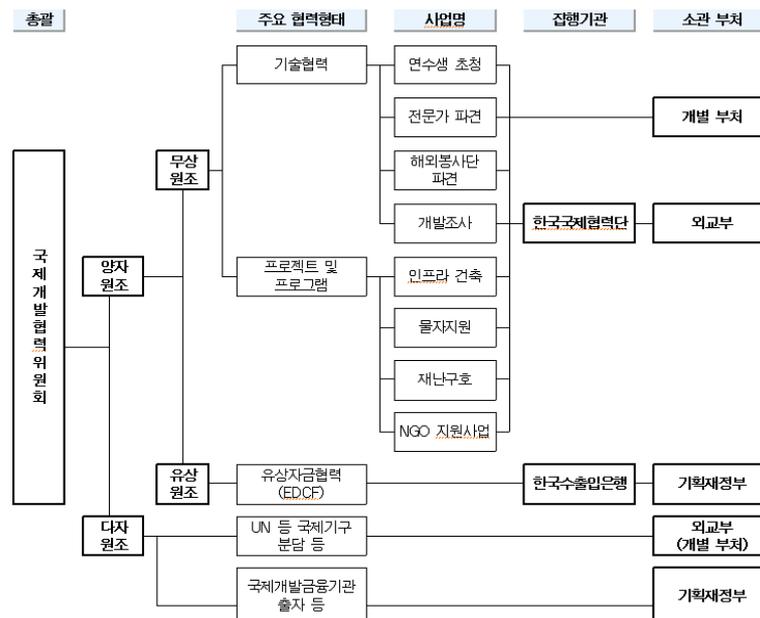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 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구속화 Zero)를 실현해야한다. 이들 국가에 대한 ODA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만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의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유상원조 사업의 입찰과정 및 수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구속화의 원인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

(1) 현황 및 문제점

ODA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고서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분절화로 인해 여전히 거래비용이 높고 정책 및 사업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ODA 사업조정 과정 및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규와 정책들을 잘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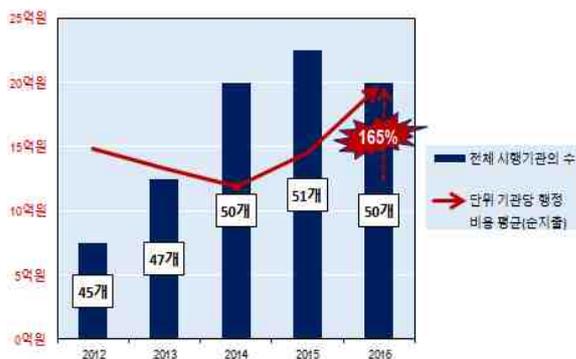
【그림6】 ODA 추진체계 (한국)

*출처 :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재인용

【그림6】과 같이, 우리정부의 ODA 추진체계는-개발재원의 협력형태에 따라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별되고 양자원조의 상환조건에 따라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별된다. 협력형태와 상환조건에 따

라서 수평적 관계의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구조와 원조의 유형에 따라서 ODA 총괄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상원조 정책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하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상원조 정책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산하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무상원조 분야별 프로젝트사업 시행기관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광역 시도 지방정부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그밖에도 기타 산하기관 또는 독립기관 단위의 협력기관들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원조의 유형에 따라서 수직적 관계의 사업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직적인 사업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해서 원조기관의 사업 중복성, 행정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 개발재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개발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림7】 원조기관 당 행정비집행 추이 (12-16년, 한국)

*주석: 1) 순지출액,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의 수 기준
2) 단위 기관당 행정비용(실선 그래프) = 전체 행정비 ÷ 전체 시행기관의 수(막대 그래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재구성

【그림7】에서 보듯, 2012-2016년 ODA 시행기관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전체 행정비집행 총액은 2012-2013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 개 기관당 행정비용의 평균 지출액은 지난 2014년 최소 11.93억 원에서 2016년 최대 19.67억 원 규모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2014년 및 2016년 전체 시행기관의 수가 50개로서 동일한 것에 비해서 행정비용의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개발재원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일례로, 농촌진흥청 산하 19개 해외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전체 예산의 40%를 일반행정 운영비로 집행하기도 했다.⁹⁾

물론 행정비용 상승의 문제는 전체 ODA 사업의 수와 책정된 약정금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로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시행기관의 수와 프로젝트사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에 단위 사업당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같은 문제는 명백히 시행기관들의 수직적 분절화와 개별 단위사업의 영세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의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들어났던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¹⁰⁾

(2) 분석 및 평가

생건전대, 그 원인은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에 있다. 유상원조와 달리 무상원조의 경우 ODA 개별 산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 25조(산하기관 설치), 제 6조 제 1항의 3호(산하기관에 관한 정관), 제 16조(출연금 지원) 규정에 따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사업의 전문성 명목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개별 산하기관을 둘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학 내 설치한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대표적이다.¹¹⁾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개별 산하기관이나 협력기관들이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핑계로 은퇴 후 직장으로 “**하도급식**”으로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최근에도 유관 기관 출신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핑계 삼아서 공정한 입찰경쟁 없이 “**산하기관 설립 → 재취업 → 일감 몰아주기 식**”의 **유착관계**로 지난 5년간 약 109억 원 어치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¹²⁾ 한편, 감사원 역시 원조 분절화의 주범이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직적으로 일원화 된 유상원조와 달리 무상원조 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 산하에 다수의 시행기관을 둘 수 있어 원조 분절화에 대한 우려가 높음으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성, 사업효율성, 개발효과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¹³⁾

이러한 분석과 사례에 비춰 볼 때, 정부가 무상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평적 이원화 구조 속에서 유·무상원조 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하지 못했고, 사업추진체계의 수직구조 속에서도 분절화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는 단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정부의 개발재원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상원조 예산 통합편성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결국, **내부적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 향후 추진과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도 봤듯이,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선개입”, “관피아”, “일감몰아주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¹⁴⁾ 향후 정부가 ODA를 외교 대표브랜드로 내세우려면 유·무상원조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과정의 책무성을 개선하려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을 조정하여 산하기관 규정을 삭제하고 경업금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상원조의 불공정한 입찰과정, 불투명한 수의계약 실태 등 분절화로 인한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그 원인을 찾아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목표를 세우고 분절화 극복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이는, 마치 건설사들의 “원도급 → 하도급 → 재도급식”의 구조로 분절화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같이 한국국제협력단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개별 산하기관이나 협력기관들은 【그림6】의 구조와 【그림7】의 통계에서도 들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협력기관”은 프로젝트사업의 원도급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았으면, 무상원조를 축소하고 다자원조 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4. 프로젝트사업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1) 문제점 및 현황

ODA의 투명성 및 책무성 측면에서, 보고서는 한국의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이 증거기반의 데이터 시스템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젝트사업의 사전 발굴단계에서의 위험분석, 중간 진행단계에서의 형성평가, 사후 완료단계에서의 성과평가 등 사업진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계한 ODA 사업평가를 강조해 왔고, 2014년 국내·외 SDGs 정책조정과 지식공유를 위해 증거기반의 ODA 사업평가를 강조하고 있다.¹⁵⁾ 우리정부는 지난 2013-2015년 연 평균 \$6백만 달러를 ODA 데이터 협력 사업에 지원했고,¹⁶⁾ 2015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에 가입하여, 2016-2017년 개발원조 프로젝트사업의 정보공개 항목 전체 39개 중 13개에서 18개로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 ODA 데이터 협력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의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구분	프로젝트사업 성과평가·품질관리				정보공개	투명성 (특점조정)	등수
	적시성	예측성	포괄성	특점			
유엔세계식량계획	100	98	85	94.33	100	94.33점	1위
스웨덴 - SIDA	100	90	82	90.67	100	92.67점	3위
영국 - DFID	100	44	84	76.00	100	76.00점	6위
미국	75	1	64	46.67	100	46.67점	18위
				...			
한국	0	0	50	16.67	20	3.33점	67위
				...			
세계보건기구	0	0	0	0	20	0점	72위

【표1】 전 세계 주요 원조기관 정보공개 투명성 지표 평가 결과 (2018.2.22. 기준) * 각 지표: 1~100 pt

- *주석: 1) 현재까지 공개된 전 세계 프로젝트 원조사업 총 647,062건 대상 (xml데이터 제출파일 기준)
- 2) 득점 = 적시성 + 예측성 + 포괄성 ÷ 3
- 3) 총점(특점조정) = 득점 × 정보공개 ÷ 100
- 4) 정보공개: OECD DAC 등 외부기관 데이터를 비교하여 100-80%, 80-60%, 60-40%, 40-0% 정보공개율 구간을 설정하여 20pt 단위로 지표 평가
- 5) 등수: IATI 정보제출기관 전체 637개 원조기관 중 민간을 제외한, 77개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데이터 추산

*출처: IATI 원조투명성 지표 재구성

【표1】에서 보듯, 2018년 IATI가 평가한 한국의 ODA 투명성 지표는 3.33점으로 전세계 국제기구 및 정부 내 주요 원조기관 77개 중 67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ODA 사업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결과이다.

시행기관명	프로젝트사업 단계별 성과평가·품질관리					총점
	사전	중간	사후		전체	
	사업 계획*	프로젝 트사업	데이터 협력	성과 공유*	예산 내역	
기획재정부	0	62	0	0	0	12.40점
외교부	0	0	0	0	0	0점
한국수출입은행 (IATI 미제출)	-	-	-	-	-	0점
한국국제협력단	0	77	50	0	28	32.40점
국무조정실	0	50	50	0	48	32.00점
교육부	0	74	50	0	43	35.55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75	50	0	42	35.50점
법무부	0	81	50	0	25	32.45점
행정자치부	0	65	50	0	12	26.00점
문화체육관광부	0	70	50	0	20	29.00점
농림축산식품부	0	77	50	0	22	30.90점
산업자원통상부	0	61	50	0	33	30.45점
보건복지부	0	71	50	0	48	36.20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0	0	0	0	0	0점
고용노동부	0	0	0	0	0	0점
여성가족부	0	76	50	0	41	35.45점
국토교통부	0	69	50	0	43	34.55점
환경부	0	55	50	0	74	39.50점
...		
기타 32개 기관 (IATI 미제출)	-	-	-	-	-	0점
전체 평균	0	56.65	38.24	0	28.18	26.02점

【표2】 국내 주요 원조기관 정보공개 투명성 지표 평가 (2018.2.22. 기준) * 각 지표: 1~100 점

*주석: 1) 현재까지 IATI에 공개된 국내 원조기관의 모든 프로젝트사업 총 1,569건 대상 평가 (xml데이터 제출파일 기준)
 2) 총점 = 집행계획 15% + 예산내역 25% + 프로젝트사업 20% + 데이터협력 20% + 성과공유 20%
 *출처: IATI의 국내 원조기관별 xml 데이터를 Publish What You Fund의 투명성 지표 분석기로 평가하여 재구성

또한 【표2】에서 보듯, 2018년 현재(2018.2.22.) IATI에 공개된 국내의 프로젝트사업 총 1,569건에 대해 “Publish What You Fund(원조투명성 국제캠페인 단체)”의 투명성 지표에 따라서 국내 시행기관들을 직접 평가해보면, 전체 평균 26.02점을 받았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50개 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이 프로젝트사업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아서 0점을 받았고, 나머지 17개 기관 중 외교부를 포함한 3개 기관이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0점을 받았다. 한편 세부항목 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5개 평가항목 중 2가지 항목에서 모든 시행기관들이 프로젝트사업의 초기 사업계획 및 사후 성과평가 관련 정보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0점을 받았고, 나머지 3개 항목의 경우 외교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고용노동부 등이 중기 프로젝트사업 과정, 사후 데이터협력

및 성과공유, 전체 예산내역이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0점을 받았다.*

결국, 【표1】과 【표2】는 한국의 ODA가 증거기반의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행기관들의 「평가 가이드」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 모두 사전정량평가 보다 사후정성평가에 집중함으로써 증거기반의 평가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¹⁷⁾ 이로 인해, ODA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들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지 못했고, 정책조정(피드백) 과정에도 평가지침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지 못했다.

(2) 분석 및 평가

생각건대, 그 원인은 정책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배제되는 평가구조에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 19조(재외공관의 역할) 규정에 따라서, 유·무상원조 정책주관 기관인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는 시행기관이나 총괄기구와는 달리 ODA사업의 평가를 주관하거나 관련 평가의견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 이러한 평가를 받게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기관들이 예산내역을 IATI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세부적인 이유까지 사실까지 살펴보면, 유상원조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축성 원조를 원칙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만 입찰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사업의 입찰정보 등을 사실상 IATI에 공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평가였다. 물론 국가협력전략(CPS) 때문에 개도국 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율 등의 차관조건 때문에 국제사회에 공개를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요식적으로 한글 본 오픈소스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것과 달리, IATI에는 영문 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평가는 IATI에 제출된 xlm 데이터 파일을 기준으로 평가했음을 밝힌다. 한편, 무상원조의 경우 수직적 분절화로 인해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별 산하기관 및 협력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평가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경우 정책 주관기관으로서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는 않지만 사후 데이터협력을 위한 성과평가 정보 등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평가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지표평가의 결과는 우리정부가 IATI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시점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되므로, 절대적인 기준이나 평가는 아니며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음을 알린다. 특히, IATI에 자주 업데이트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정을 고려해 2018.2월 중 가장 높게 책정됐던 지표를 기준으로 충분한 예비평가 했음을 밝힌다.



【그림8】 한국수출입은행 평가절차

*주석: “안공평가”를 제외하면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평가절차와 대체적으로 동일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그림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절차

*출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재인용

【그림8】에서 처럼, 유·무상원조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프로젝트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전년도 중간점검(형성평가) 및 사후평가(성과평가)를 수행하고, 또한 이를 참고하여 당해연도 사업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이로써 【그림9】와 같이, ODA 사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평가서를 총괄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또한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정책조정예 반영하여 시행기관들이 제출한 당해연도 지원사업안을 심의한다. 반면, ODA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는 평가의 주체가 아니며, 다만 외교부가 시행기관의 사업진행단계의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협의체로만 규정돼 있다.

결국, 【그림8】과 【그림9】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정책 주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시행기관들의 사업평가 및 총괄기구의 정책조정 과정을 견제할 수 없는 평가구조로 되어있음을 뜻한다. 그 결과, 프로젝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이 낮았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의 성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33조원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확정된 손실만 13조 원에 달하고 기타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의 손실이 났다. 즉, 수익률 0%를 기록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6,900%의 부채를 떠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¹⁸⁾ 적어도 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거나 타당성평가만 제대로만 이루어 졌었다더라도 이같은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었고, 사후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증거기반의 합리적인 성과평가와 정책조정을 통해서도 사업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부실한 사업성과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사업의 사전 발굴단계에서의 합리적으로 위험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타당성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던 결과였다.

(3) 향후 추진과제

정부는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시행기관들에 대한 견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평가주체로 명시하여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전정량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사업의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권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 ①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향후 ODA/GNI 목표수준 재검토하고, 1년 단위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 ② 유상원조 추진체계의 구축화 및 대기업 중심의 입찰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구축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마련하여 비구축화 비중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
- ③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및 한국국제협력단 협력기관(산하기관 및 독립기관)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점검할 것.
- ④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여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에 대한 감사 역할 부여할 것.
- ⑤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프로젝트사업 품질관리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 ① 정부의 리스크 보증, 민간 사회개발펀드 투자 및 대출지원, 개발국채 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제시할 것.
- ②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원조 비구축화 100%(구축화 Zero) 목표설정하고, 실질적인 이행방안 제시할 것.
- ③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위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사전정량평가 기능을 강화할 것.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 ①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
- ② 「한국국제협력단법」 제 25조(산하기관 설치) 규정 삭제, 동법 제 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강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개혁 목표와 방안을 제시할 것
- ③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

■ 참고자료

- * OECD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February 7, 2018) accessed December 2017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 member,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88829-en>
- 1) OECD (2016),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 Addendum 1. (April 14, 2016), Paris, OECD, Symbol: DCD-DAC(2016)3/ADD1/FINAL, accessed February 17 - March 23, 2016, Pp. 37-43; *cite: [https://www.oecd.org/dac/stats/DCD-DAC\(2016\)3-ADD1-FINAL-ENG.pdf](https://www.oecd.org/dac/stats/DCD-DAC(2016)3-ADD1-FINAL-ENG.pdf)
 - 2) Benn, J., C. Sangaré and T. Hos (2017), Amounts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Guarantees, syndicated loans, s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direct investment in companies, credit line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 No. 36, OECD Publishing, Paris; *see: <http://dx.doi.org/10.1787/8135abde-en>
 - 3) OECD (2017a), "Korea", in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October 17), Pp. 228; *see: <http://dx.doi.org/10.1787/dcr-2017-29-en>
 - 4) OECD (2017b), 2017 Report on the DAC Untying Recommendation (April 3, 2017) accessed March 31, 2017, Symbol: DCD/DAC(2017)6/FINAL, Pp. 6, Para. 14; *reference to: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2017-Report-DAC-Untying.pdf>
 - 5) 감사원,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 (2017.4월), 73-76면 참조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mdex=bai20&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117463
 - 6) 정태현,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역사비평사, 2010), 제 15장 “해방 후 남한 경제의 총체적 부실” 중 “귀속재산 불하, 불로소득과 정경유착의 기원”에서 재인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08797&cid=55625&categoryId=55625>
 - 7) Lisa Caripis, Combatting Corruption in Mining Approvals: Assessing the Risks in 18 Resource-rich Countries (December, 2017),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Australia, ISBN: 097524390X, Pp. 8-10; *reference to: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combating_corruption_in_mining_approvals
 - 8)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수출입銀, 해외진출 지원 대기업 편중 86% 육박(종합)” (2016.10.11.)
 - 9) 감사원, *op. cit.*, 32면 참조
 - 10) 감사원, *op. cit.*, 20-22면 참조
 - 11) 감사원, *op. cit.*, 219-225면 참조
 - 12) 한국일보, 강창일 의원 “[단독]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 ‘딱딱 밀어준’ 코이카” (2017.10.11.)
 - 13) 감사원, *ibid.*
 - 14) 뉴시스, 국정기획위 “최순실, 공적개발원조에 깊이 개입” (2017..06.01)
 - 15) OECD/UNDP (2014),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4 Progress Report, OECD Publishing, Paris (April 3, 2014); *see: <http://dx.doi.org/10.1787/9789264209305-en>;
OECD (2014), Measuring and Managing Resul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 review of challenges and practices among DAC members and observers (November 21, 2014) accessed September 16, 2014, Symbol: DCD/DAC(2014)45/FINAL; *also see: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CD/DAC\(2014\)45/FINAL&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CD/DAC(2014)45/FINAL&docLanguage=En)
 - 16) OECD (2017a), *ibid.*
 - 17) 한국수출입은행/대외협력기금, 「EDCF 평가매뉴얼」 (2011.11월), 24-25면 참조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2008.11월), 59-60면 참조
 - 18) 고발뉴스, 홍영표 의원 “광물자원공 추가지원 막아선 홍영표 자원외교 20조 손실에도 처벌 0명”, “광물“6900% 부채비율로 존재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다” (2018.01.05.)

【그림1】 ODA 재원규모 추이 (10-16년)

stats.oecd.org(2017.12월 기준) 통계를 인용하여 재구성

【그림2】 ODA 재원마련 추이 예측 시뮬레이션 (17-30년)

stats.oed.org(2017.12월 기준) 통계를 인용하여 재구성

【그림3】 전체 양자원조 비구속화 추이 (12-16년) 및 【그림4】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추이 (12-16년)

- 1) 2015-2016 비구속화 비중(기술협력 포함, 막대 그래프): 「OECD DAC 2018 동료검토 보고서(2018.2월)」에서 stats.oecd.org(2017.4월 기준) 통계를 재인용하여 재구성
- 2) 비구속화 비중(기술협력 제외, 실선 그래프): 「OECD DAC 2017 비구속화 권고안(2017.4월)」에서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2017.4월 기준)의 통계를 재인용하여 재구성
- 3) 비구속화 비중(기술협력/행정비 제외, 점선 그래프): stats.oed.org(2017.12월 기준) 통계를 인용하여 재구성

【그림5】 유·무상원조 비구속화 추이 (12-15년, 한국)

- 1) 유·무상원조 비구속화 비중(막대 그래프): 『숫자로 보는 ODA: 2016 세계 ODA 통계자료집』 (한국수출입은행, 2016.12월)에서 OECD DAC IDS Online(2016.10월 기준) 통계를 재인용하여 재구성
- 2) 전체 평균(실선 그래프): stats.oed.org(2017.12월 기준) 통계를 인용하여 재구성

【그림6】 ODA 추진체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 (감사원, 2017.4월) 10면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자료 재인용

【그림7】 원조기관 당 행정비집행 추이 (12-16년, 한국)

OECD의 통계(stats.koreaexim.go.kr)를 인용하여 재구성(2018.2월 조회)

【그림8】 한국수출입은행 평가절차

한국수출입은행 대외협력기금(www.edcfkorea.go.kr) 홈페이지 인용

【그림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절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www.oda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인용

【표1】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 정보공개 투명성 지표 평가 결과 (2018.2.22. 기준)

IATI 홈페이지(http://dashboard.iatistandard.org/summary_stats.html)의 지표 인용하여 재구성

【표2】 국내 주요 원조기관 정보공개 투명성 지표 평가 (2018.2.22. 기준)

IATI 홈페이지(<https://iatiregistry.org/publisher/odakorea>)의 기관별 xml 데이터를 Publish What You Fund의 투명성 지표 분석기(<http://dataqualitytester.publishwhatyoufund.org>)로 평가하여 재구성

기타 재구성 기준 및 지표평가 기준은 아래 가이드라인 링크참조:

<http://www.publishwhatyoufund.org/wp-content/uploads/2017/06/2018-Aid-Transparency-Index-Guidelines.pdf>